

##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915호

「철도차량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63호, 2021.11.18.)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철도운행안전성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설계·제작 시 국제안전표준(RAMS)의 적용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 「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(‘20~‘24)」에 따라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을 추진하며, 기존 도로 위에 건설되는 노면전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구매에서 발주자(운영자) 요구조건으로 구원운전 가능토록 개정하고, 철도차량 화재예방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품목에 추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우발고장(Random Failure) 특성을 갖는 철도차량 구성품인 종합제어 장치에 대해서 RAMS 국제표준을 적용토록 기술기준을 개정
- 나. 도시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및 공기청정기 관련 표준을 추가하여 개정

- 다. 노면전차의 최대 구배에서 구원운전 조건을 고장편성과 동일한 노면 전차 차량이 아닌 발주자(운영자)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
- 라. 철도차량 화재예방기준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체 외장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 면제 조항 삭제 및 안전품목에 추가
- 마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철도운행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#### 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 
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
- 전화 : 044-201-4604, 4608 / 팩스 : 044-201-5672